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2가단1070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7. 15.

판 결 선 고 2022. 8.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5,568,39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68,39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홍주현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이고, 위 C는 위 양수금 채무의 '채무자' 이며, 피고는 사해행위로서 위 C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악의의 '수익자' 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소외 D 주식회사는 2017. 7. 18. 위 C에게 금 500만원을 계약 만료일 2019. 5. 2., 대출이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7.9%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대부거래계약서 참조).

그런데 위 C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D(주)는 2019. 12. 16. 원고에게 위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이후, 원고는 위 C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차전8959호), 2020. 10. 30.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지급명령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위 C는 원고에게 금

5,568,393원 및 그 중 금 3,045,506원에 대하여 2021.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C는 2017. 10. 19.경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증여행위의 사해성’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특정한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채권자가 추급할 수 있는 채무자들의 총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한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감소되어 그 특정한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C는 위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듯한데,

사실상 위 부동산이 유일 소유 재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위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않고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위 C의 2017. 10. 19.자 증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학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채무자 C의 어머니로 추정됩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한 위 C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위 사해행위 이전인 2015. 11. 9. ‘채권최고액 9,600만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사해행위 이후인 2017. 12. 13. 말소되었으며, 2017. 12. 12. ‘채권최고액 1억 1,400만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인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따라서 본 건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2021. 12. 24.까지의 원리금인 금 5,568,393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양시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지방 4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내지 4층 및 지층 각 128.40㎡

(내역:1,2,3,4층 다세대주택 지층 64.20㎡다세대주택 64.20㎡ 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양시 대 42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8.6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28분의 21.4 ㎡

